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일본팀 연구위원
keiokim@kiep.go.kr

이형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일본팀 선임연구원
hklee@kiep.go.kr

이정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일본팀 연구원
leeje@kiep.go.kr

김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jegook@kiep.go.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 목적으로 함.
 - 일본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TPP 탈퇴 이후 미국을 배제한 TPP11 협상을 주도하여 2017년 11월 기본합의를 도출하였고, 미국의 NAFTA 및 한·미 FTA 재협상 우선 전략으로 다소 시간적 여유는 확보하였지만 미국의 미·일 양자간 FTA 협상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함.
 - 우리나라 역시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를 빌미로 한 한·미 FTA 재협상 요구(2017년 6월)에서 드러나듯 미국의 통상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
-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목적은 한·일 간 경쟁에 대해 FTA를 둘러싼 경쟁 관점에서 접근한 후, 일·ASEAN FTA(AJCEP)를 비롯한 일본의 기체결 FTA와 현재 협상 중인 RCEP, 한·중·일 FTA, 그리고 2017년 11월 일본 주도로 기본합의에 도달한 TPP11과 2017년 7월 기본합의에 도달한 일·EU FTA에 드러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이들 RTA(Regional Trade Agreement)는 각자 시대적 배경과 경과를 달리하고 있어 분석 방법론 역시 RTA의 경과 단계에 따라 달리 함.
 -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RTA는 협상 경과나 과제, 일본 측 입장(stance)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기본합의에 이른 경우(TPP, 일·EU FTA)에는 협정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협정체결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가급적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AJCEP처럼 이미 발효가 된 RTA의 경우에는 그것이 일본경제(무역, 투자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모색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① 1980~90년대 미·일 통상분쟁

- WTO 출범 이전 GATT 체제하에서 미국 행정부는 반덤핑 제소, 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규제 조치를 시작으로 '회색' 수입제한조치라고 불리는 수출자율규제(VER), 시장질서유지협정, 다자간섬유협정(MFA) 등은 물론, 통상법(Trade Act)에 의거한 무역보복조치도 불사하였고, 그 상대국은 주로 일본이었음.
 -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 공식적으로 협상기구를 조직하여 대일(對日) 통상압력에 나선 것은 1985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MOSS(Market-Oriented Sector Selective: 시장지향형 분야별 협상)였음.
 - MOSS는 과거 일본산 섬유, 철강, 컬러 TV, 자동차 등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출자율규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기통신, 전자, 의약품·의료기기, 목재제품, 운송기기 분야로 대상 분야를 재정비하여 관세철폐와 상관행을 포함한 비관세장벽 철폐에 협상력을 집중
 - 1989년 시작한 미·일 구조문제협의(SII) 역시 미국의 대일 무역불균형이 일본의 구조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저축·투자 패턴, 토지이용, 유통, 배타적 거래 관행, 계열관계, 가격메커니즘 등 6개 항목을 개선하는 데 집중
 - SII는 기존 통상압력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일 무역불균형을 해소하지는 못하였지만 일본의 대규모 재정지출, 미국계 유통업체의 일본시장 진출과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나아가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1993년 일본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을 3년 후에 1~2% 대로 낮춘다는 목표 아래 일본의 구조개혁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미·일 포괄경제협의(Framework Talk)라는 새로운 통상협의체를 구성하였고, 1997년에는 아예 일본의 전기통신, 주택, 의료기기·의약품, 금융서비스, 에너지 분야에서의 규제완화로 협의 의제를 좁히는 미·일 규제완화 대화를 개시하기도 함.
- 1980년대에 본격화된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의 '성과'를 산업분야별로 개괄해 보면,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은 일본의 대미 통상전략을 수출확대에 기초한 '중상주의적' 통상정책에서 직접투자 혹은 기업간 제휴강화로 선회하게끔 만들거나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는 일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킨 결정적 계기로 작용함.
 - 일본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은 통상법 301조 등을 배경으로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였는데, 1981년부터 1993년까지 13년에 걸친 수출자율규제를 비롯하여 1986년 MOSS 협의에서는 일본기업의 외국산 자동차부품 구입 촉구, 외국산 부품 사용에 대한 무차별 촉구, 미·일 포괄경제협의(Framework Talk)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시장 접근 촉진 및 부품의 판매기회 확대 촉구 등 시장개방 요구로 확대되었고, 이를 계기로 일본

자동차 업계의 대미 직접투자가 대폭 증가

- 미·일 통상분쟁은 반도체 분야에서 절정을 이루었는데,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 체결 등을 계기로 당시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하였던 일본이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제약에 묶여 한국, 대만의 'Catch-up'을 허용하게 됨.

②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일 통상압력

●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은 WTO보다 국내법 우선, 수입제한조치 확대, 기체결 FTA의 재협상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과 통상법을 활용하여 수입제한조치를 확대해가고 있는데, 각종 무역구제조치 외에도 그동안 사문화되었던 각종 통상법(statutes of trade law)에 기초한 행정 권한을 발휘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한다는 점이 특징

●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일 통상관계가 과거 1980~90년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미·일 경제대화라는 새로운 통상협체제를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대일 통상압력을 회피하는 전략을 구사

- 미·일 경제대화는 2017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협의 의제가 재정·금융 및 구조정책, 무역·투자 규범, 분야별 협력 등 세 가지 분야로 압축됨.

표 1. 미·일 경제대화의 주요 의제 및 현황

의제	현황	주요 쟁점
재정·금융 및 구조정책	- 미국 재무부, 2017년 상·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연속 일본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포함	- 미국이 미·일 FTA에 '환율조항' 포함 요구. 단 일본 재무성은 반발
무역·투자 규범	- 일본이 PHP 제도하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의 소음·배기가스 검사 간소화에 합의 - 일본산 감(생과일)과 미국 아이다호 주(州)산 감자의 상호 수출금지 해제 - 일본은 지리적 표시(GI) 제도에 대한 투명성·공평성 제고에 합의	- 미국이 미·일 FTA 협상에 강한 '의욕' 표명. 단 일본은 소극적 자세 견지. 미국의 TPP 복구를 기대 -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거부 - 일본의 약가 인하 → 미국의 발발에도 일본은 정책 고수
분야별 협력	- 인프라·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합의 · 교통인프라 분야 협력각서 서명 · 미·일 전략에너지 파트너십 협력각서 서명 - 일본정부(외무성)와 미국 주(캘리포니아, 워싱턴, 메릴랜드, 인디애나)와의 경제 및 무역관계에 관한 협력각서 서명	- 일본기업의 대미 직접투자. 일본은 고용창출효과 등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여전히 쟁점

- 그간 미·일 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나 일본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장벽(검사절차), 감·감자의 수출해금 문제, 지리적 표시(GI) 제도의 투명성 제고, 인프라·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등 많은 분야에서 극단적인 마찰양상을 모면하거나 상호협력 양상을 연출하였으나, 주요 쟁점이었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에서는 미국이 미·일 FTA에 환율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불씨'가 남아 있고, 미국의 TPP 탈퇴 후 미국의 복귀를 기대하는 일본과 미·일 양자간 FTA 협상을 추구하는 미국 간 입장 차이는 여전한 상태임.

2) 일본의 FTA 정책

①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AJCEP, RCEP,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 일본정부는 2010년대 들어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TPP와 일·EU FTA의 협상 타결을 서두르는 등 한국과의 FTA 경쟁을 크게 의식

- 2017년 7월 현재 일본은 15개의 FTA(다자간 FTA 및 양자간 FTA)를 17개국과 체결(발효 기준)하였으나, 한 국가의 무역총액에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FTA 비율을 보면, 한국 67.9%, 미국 47.5%, EU 33.0%에 비해 일본은 22.4%에 지나지 않음.

● 현재 일본이 FTA를 체결(발효기준)한 국가·지역은 일본과의 무역 비중이나 잠재력을 감안할 때 호주, 인도를 제외하면 ASEAN 지역·국가가 거의 유일한 FTA 전략 지역임.

- 일본정부가 2004년 채택한 FTA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향후, 나아가 현재의 FTA 정책기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첫째, 일본은 FTA 체결 대상국가를 선정하는 기준으로서 일본의 민감품목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지 여부와 상대국이 WTO나 FTA상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시한다는 점이고, 둘째, FTA 체결을 통해 자국의 상품·서비스의 수출 확대와 투자 확대는 물론이고 지재권 보호 등 일본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셋째, TPP나 일·EU FTA 협상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국가(특히 한국)와의 FTA 체결 경쟁을 의식하여 FTA를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주목함.
- 위와 같은 일본정부의 FTA 정책기조는 상품협정만을 대상으로 하여 2008년 4월 협상을 타결한 일·ASEAN FTA(AJCEP)와 ASEAN과는 별도로 체결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베트남과의 양자간 FTA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남.

② 일·ASEAN FTA의 무역효과

● 일본이 ASEAN과 체결한 FTA의 무역효과는 일본의 총수출·입 및 주요 품목의 수출·입 추이를 대 ASEAN과 대세계, 2007년 이전 추세와 2008년 이후 추세를 통한 비교와 AJCEP, 일·ASEAN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를 더미변수로 한 회귀분석(Pooled OLS)을 통해 확인함.

- 분석 결과, 일본과 ASEAN이 체결한 AJCEP 및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는 FTA가 발효되기 전에 비해 발효 후 총수출과 총수입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효과와 2012년 이후 일본의 총교역 감소추세를 완화하는 효과를 확인함.
- 즉 AJCEP, ASEAN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를 더미변수로 한 회귀분석(Pooled OLS) 결과 AJCEP 및 ASEAN 개별 회원국과 FTA 발효 전에 비해 발효 후 일본과 ASEAN 간 총수출과 총수입이 증가했으며 주요 품목 중 철강, 자동차 수출, 전자기기 수입 또한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일본정부가 ASEAN 및 개별 회원국과의 FTA 협상에서 자국기업의 가치사슬 확대 측면에서 주력했던 철강과 자동차 부문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표 2. 일본-ASEAN FTA의 수출효과: Pooled OLS 추정결과

	종속변수			
	총수출	철강	자동차	전자기기
상수항	-439.2 (907.7)	-78.46 (111.6)	-63.29 (103.4)	95.06 (237.1)
양자간 FTA	7,505*** (1,129)	323.5** (138.0)	393.1*** (128.3)	2,685*** (292.1)
AJCEP	2,527** (972.9)	364.2*** (117.2)	335.8*** (110.4)	-105.0 (252.2)
GDP	0.0156*** (0.00268)	0.00187*** (0.000322)	0.00295*** (0.000305)	0.00101 (0.000692)
관측수	210	204	210	210
R ²	0.444	0.309	0.494	0.379

주. 1) 종속변수 중 '총수출'이란 일본의 ASEAN 10개국에 대한 수출액을 의미하고, '철강', '자동차', '전자기기'도 마찬가지임. 독립변수 중 '양자간 FTA'란 일·싱가포르 FTA, 일·브루나이 FTA, 일·말레이시아 FTA, 일·필리핀 FTA, 일·태국 FTA, 일·인도네시아 FTA, 일·베트남 FTA를 의미하나, 회귀분석에서는 각각의 FTA가 발효된 시점(연도) 이후는 1, 그 이전은 0을 취하는 '더미(dummy)' 변수임. 'AJCEP' 역시 AJCEP 발효 시점(2008년) 이후 1의 값을, 그 전은 0을 취하는 더미변수임.
2) () 안은 표준오차를 뜻하고,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③ 일본기업의 FTA 활용과 생산 네트워크 구축

● 일본기업들은 일·태국 FTA와 일·인도네시아 FTA, 일·말레이시아 FTA, 일·베트남 FTA, AJCEP 순으로 2012년 이후 FTA를 활용한 수출이 급증

- 철강, 자동차·자동차부품, 전기·전자기기 등 일본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ASEAN 각국의 고율의 관세를 인하·철폐하는 데 주력한 일본정부의 FTA 전략이 주효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평가

- 일본 제조업 기업의 해외 법인별 매출액 비중을 보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5년 기준으로 미국 24.5%, 중국 24.2%, ASEAN 4 18.6%로 중국과 ASEAN 4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일본정부의 FTA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일본 제조업 기업의 ASEAN 4 및 아시아 역내 조달 비중이 1997년 각각 41.4%, 56.4%에서 2015년에는 각각 65%대, 70% 후반대로 상승하고, 판매 비중 역시 1997년 각각 47.8%, 61.9%에서 2015년에는 각각 50.5%, 77%로 상승하고 있음.
- 이것은 ASEAN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이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FTA 전략, 특히 AJCEP을 통한 누적 원산지규정 도입, 특혜관세 적용 등이 일본 기업의 ASEAN 역내 생산 네트워크 강화에 일조했음을 의미

- 본 연구는 일본정부가 FTA 협상에서 주력했던 상대국·지역의 서비스 및 투자에 관한 규제완화나 규제의 투명성 확보에 힘입어 국제수지표상 해외직접투자 성과가 개선되고 있는 점에도 주목

- 분석 결과 일본기업이 ASEAN 5개국(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ODI)로 거둬들인 수익이 매우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 특히 2013년 이후에는 ASEAN 5개국에서 연평균 1조 5,000억 엔에 가까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보면, 태국이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15%,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
- 위와 같은 일본기업의 태국을 중심으로 한 ASEAN 생산 네트워크 확충은 전체 거시경제 관점에서 FTA 정책이 경상수지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음.

④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

- 일본이 TPP를 고수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배경을 당초 TPP 협정문 자체가 일본의 5대 농산물 품목의 '성역화' 요구를 거의 충족한 점과, 설령 미국이 복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시아 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한국)이 가세하면 TPP16의 경제적 효과가 RCEP을 능가한다는 점에서 찾았음.

- 첫째, 일본은 TPP 12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95%)의 관세철폐율에 합의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농림수산물 2,328개 품목 가운데 즉시 철폐율은 51.3%(최종 철폐율: 81.0%)에 불과. 소위 농산물 5대 '성역품목'(쌀, 밀·보리, 설탕류(감미자원 작물), 소고기·돼지고기, 유제품, 총 586개) 중 412개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유예에 성공
- 둘째, 일본 입장에서 RCEP의 경제적 효과가 TPP11보다는 크지만, 향후 미국이 TPP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점과 미국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상기 아시아 5개국이 합세하여 TPP16에 '성공'하면 RCEP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일본 자동차업계의 경우 TPP가 발효되면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는 경

우 수입관세가 사라져 생산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과 FTA 미체결국인 캐나다의 경우에도 캐나다에 완성차 공장을 둔 도요타 자동차나 혼다 등이 생산비용 절감을 기대

- 서비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점,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경우 편의점을 포함한 유통업에서 외자규제 완화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점이 일본 재계의 TPP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 TPP의 통상규범 분야 중에서도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지재권 관련 규정은 일본이 TPP를 상찬하기에 충분한 것들이라 평가할 수 있음.

- 원산지 규정 분야에서는 AFTA의 '부분누적' 제도를 뛰어넘는 '완전누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TPP 3원칙', 즉 국경간 정보유통 허용, 데이터 보존·처리 관련 컴퓨터 설비의 체결국 내 설치(Data Localization) 요구 금지, 대량판매용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이전·접근 요구 금지를 관철시키고 있는 점,
-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최혜국대우와 무차별대우 원칙을 도입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재권 분야에서는 TPP11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로 도입한 주요 조항들을 대부분 동결하였음에도 지재권 보호수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점을 들 수 있음(표 3 참고).

표 3. 일본 입장에서 본 TPP11의 주요 합의내용(2017년 11월 현재)

분야	세분야	합의내용
시장접근 : 관세양허	농림수산물(일본의 시장개방)	- 586개 농산물 5대 '성역품목'(쌀, 밀·보리, 설탕류(감미자원 작물), 소고기·돼지고기, 유제품)이 중 412개에 대해 관세철폐 유예
	공산품(해외의 시장개방)	자동차: 캐나다, 6.1% → 발효 후 5년째 0% 베트남, 70% → 발효 후 10년째 0% - 타월: 캐나다, 17% → 즉시 철폐
원산지규정		- 완전 누적제 도입
서비스무역·투자	시장접근	·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방식 도입 · (베트남) 소매업 판매점(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두 번째 이후의 출점에 대한 경제수요 테스트(ENT) 폐지(발효 5년 후). 전기통신, 영화상영·제작·배급, 오락서비스, 해상운송서비스, 부동산, 금융 분야에서의 외자규제 완화 · (말레이시아) 부미푸트라 우대정책은 유지하되 서비스무역과 투자 분야의 일부 자유화: 유통·금융·제조업 분야에서의 외자규제 완화
		전자상거래
규범	정부조달	· WTO의 GPA에 가입하지 않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부분적으로 정부조달시장 개방. GPA 가입국들은 대상기관 확대 혹은 적용 기준금액 완화 방식으로 GPA 이상의 시장 개방
	국영기업	· 국영기업 거래의 상업적 고려 원칙 및 무차별대우 원칙 도입. 국영기업에 대한 비상업적 원조 규제조항 도입
	지재권	· 바이오 의약품의 데이터 보호기간 원칙상 8년(단, 동결) · 지재권 보호 강화: 차입 등 국경조치 행사 가능. 상표권 침해 등에 형사 처벌 및 민사상 구제조치 조항 삽입

⑤ 일·EU FTA

● 일본 입장에서 일·EU FTA는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SPA)과 함께 양자간 전략적 경제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일·EU FTA는 수출경쟁력 강화, EU와의 규제협력 진전, 일본 통상전략의 재가동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
 - 첫째, EU 시장에서 일본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임. 일·EU FTA가 실현되면 일본은 인구 5억 명, 역내 GDP 16.4조 달러의 EU 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됨. 특히 일·EU FTA가 발효된 후 최종 단계에 이르면 일본 자동차업체는 기체결된 한·EU FTA로 EU 시장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한국업체와 동등한 경쟁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둘째, 기준·규격의 조화 및 상호승인과 같은 규범 형성에서 일·EU FTA를 바탕으로 양자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일본은 국제표준화 작업에서 영향력이 큰 EU와 협력하여 일본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규제와 기준·규격을 글로벌한 규제·표준으로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셋째, 일·EU FTA 추진에 따라 일본이 통상전략을 재가동할 수 있게 됨. 일본정부는 일·EU FTA, TPP, 미·일 경제대화, RCEP이라는 '4대 메가 FTA'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번 합의 도출은 TPP11, RCEP 협상, 미·일 경제대화의 동시 병행을 견인하고, 중기적으로는 미국의 TPP 복귀를 포함한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FTAAP)을 추진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일·EU FTA에서 상품시장 접근의 특징을 한·EU FTA와 비교하면 [표 4]와 같음.

- 첫째, 일·EU 및 한·EU FTA 모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에서의 개방이 이루어짐.
- 둘째, 일·EU FTA에서는 공산품에 대한 개방은 상호간에 대칭적이었으나, 농산물에서는 비대칭적이었음. 반면 한·EU FTA에서는 양자간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공산품과 농산물 모두에서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졌음.
- 셋째, 품목 수 기준 자유화율에서 즉시 철폐율은 일본(공산품 96%, 농산물 54%)이 한국(90.7%, 42.5%)보다 높게 개방함.
- 넷째, EU 시장에서의 공산품 개방과 관련해 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은 일본이 한국보다 2년 더 길게 합의가 이루어짐. 이는 일본산 자동차의 높은 경쟁력 외에도 농산물, 비관세조치 등에서 EU가 요구하는 만큼 일본이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자동차 부품은 양쪽 FTA 모두에서 즉시 철폐. 컬러 TV는 양쪽 모두 5년 내 철폐
- 다섯째, 일본 및 한국 시장의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 쌀은 양쪽 FTA 모두에서 완전 제외(full exclusion). 양 시장에서 EU의 관심이 높았던 돼지고기는 최장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수입 급증 시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로 함. 치즈는 한국과 일본 모두 수입쿼터를 적용하고 양허기간을 15년으로 장기화함.

- 여섯째, 비관세장벽 완화와 관련해 일본 및 한국에 대한 EU산 자동차 수출 시 양국 모두 UN ECE 규정을 적용하고, EU의 형식승인을 인정하기로 함.

표 4. 일·EU 및 한·EU FTA의 상품시장 자유화율(품목 수 기준) 및 양허 비교

(단위: %)

		일·EU FTA		한·EU FTA	
		EU	일본	EU	한국
전체 품목 최종 단계		99	94	100	100
공산품	즉시 철폐	96.3	96.0	97.3	90.7
	최종 단계	100	100	100	100
농산물	즉시 철폐	95	54	91.8	42.1
	최종 단계	98	82	100	100
EU 시장 접근	자동차	7년 내 철폐(단계적 인하)		5년 내 철폐(단계적 인하)	
	자동차부품	즉시 철폐		즉시 철폐	
	컬러 TV	5년 내 철폐		5년 내 철폐	
	지리적 표시	일본산 주류		농식품, 포도주, 증류주	
일본/한국 시장 접근	쌀	양허 제외		양허 제외	
	돼지고기	차액관세제도 유지, 10년 관세철폐		5~10년 관세철폐	
	치즈	15년 관세철폐, 수입쿼터 적용		15년 관세철폐, 수입쿼터 적용	
(비관세조치)	자동차	(일본) UN ECE 규정 적용, EU의 형식승인을 인정		(한국) UN ECE 규정 적용, EU의 형식승인을 인정	
(지리적 표시)	주류	GI 상호 보호 확보		GI 상호 보호 확보	

● 일·EU FTA에서 비상품시장 접근의 특징을 한·EU FTA와 비교하면 [표 5]와 같음.

- 첫째, 서비스 분야는 일·EU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으나, 한·EU FTA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던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
- 둘째,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일·EU FTA에서 일본은 ISDS를, EU는 ICS 도입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협상 타결 후에도 별도로 협의. 그런데 한·EU FTA에서는 당시 이에 대한 협상 권한이 EU 집행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대신 '투자 보호 재검토 규정'을 별도로 협정문에 포함
- 셋째, 인력이동과 관련해 일·EU FTA에서 EU는 GATS 플러스로 확대했으며, 한·EU FTA에서는 대졸연수생을 신규로 포함
- 넷째, 정부조달과 관련해 일·EU FTA에서 일본은 48개 중핵도시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의 사업과 철도 분야에 대한 EU 기업의 참여를 허용. 반면 한·EU FTA에서는 정부조달시장의 철도 분야가 쟁점이 아니었음.

표 5. 일·EU 및 한·EU FTA의 비상품시장 개방 비교

	일·EU FTA	한·EU FTA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거티브 방식 도입 - EU: GATS 이상 확대 - 일본: 포괄적 유보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지티브 방식 도입 - 한국: 전반적으로 한·미 FTA(네거티브 방식)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 공공성 강한 분야는 유보 확보 - EU: GATS 이상으로 확대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와 같음 - 단, 분쟁해결절차 미해결(일본은 ISDS, EU는 ICS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보호 관련 사항 미포함 (당시 EU 법체계상 투자보호 관련 협상 권한은 회원국이 보유, EU 집행위원회의 권한 외 상황) - '투자보호 재검토 규정'을 별도 규정(한국은 EU의 개별 회원국과 BIT 체결한 상태)
자연인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GATS 이상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졸연수생을 신규로 포함해 청년층의 상호교류 촉진
정부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중핵도시, 지방독립행정법인 사업 개방, 철도 분야 개방 - EU: 철도제품 분야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사업은 양측 모두 1,500만 SDR(284억 원) 이상에 대해 개방 - EU: 중앙정부 및 모든 단위 지자체 사업 개방 - 한국: 국내 민자사업 시장은 사실상 개방된 상태

● 일·EU FTA에서 규범 분야의 특징을 한·EU FTA와 비교해 정리하면 [표 6]과 같음.

- 첫째, 24개 장(chapter)으로 구성된 협정문의 규범 분야 중에서 기업지배구조, 농업협력, 규제 협력, 중소기업 장(chapter)의 경우 한·EU FTA에서는 별도로 구분(포함)되어 있지 않음. 특히 기업지배구조, 농업협력은 TPP에도 없는 분야
- 둘째, 일·EU 및 한·EU FTA 모두 자율증명제도를 도입
- 셋째, 전자상거래 분야는 양측 모두 동일하게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전송물에 대해 무관세화. 일본은 TPP에서 적용했던 개인정보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 자유 확보(현재 EU에서는 법으로 역외 이동을 금지), 컴퓨터 관련 설비의 설치·이용 요구 금지에 대해서도 협정문에 포함시키고자 노력
- 넷째, 기업지배구조의 경우 한·EU FTA에는 없는 분야이고, 지적재산에서 GI 상호간 보호는 양측 모두 도입

표 6. 일·EU 및 한·EU FTA의 규범 분야 비교

	일·EU FTA	한·EU FTA
협정문 구성	- 전문, 총칙 등 24개 분야로 구성	- 서문, 제1장-제15장, 의정서로 구성
원산지 규정	- 자율증명제도 도입	- 자율증명제도 기적용
전자상거래	- 전자적 송신에 대한 관세 비부과	-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전송물에 대해 무관세 유지
기업지배구조	- 각국의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 확보	- 미포함
지적재산	- 농산품과 주류에 대한 GI 상호 보호 확보	- 농산품과 주류에 대한 GI 상호 보호 확보

- 일·EU FTA가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는 분쟁해결 절차,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추가 과제가 남아 있음.
 - 투자보호 관련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ISDS와 EU의 ICS 선호가 충돌함에 따라 우선 나머지를 중심으로 먼저 협상을 타결했으며, 이 부분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함. 전자상거래는 소스코드의 이전·접근 요구 금지에만 합의하였고, 개인정보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의 자유, 컴퓨터 관련 설비의 설치·이용 요구 금지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함.

3. 정책 제언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 미국과의 통상관계에서 한국과 일본이 대면하고 있는 현안 이슈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현재 진행 중인 미·일 경제대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본정부의 협상 '태도'는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협상전략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
 - 즉 일본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중국이 미국의 최대 무역불균형 상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대미 통상정책 기조를 경제협력으로 급전환하였는데, 차관급 회의인 '성장을 위한 미·일 경제파트너십(2001~09년)'이라는 통상협의체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
 - 물론 미·일 경제대화가 전적으로 일본 측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재무성이 미·일 FTA에 '환율조항'을 포함하자는 미국 측 요구에 대해 2012년 12월 아베 내각의 출범과 함께 진행된 엔화 약세는 G-7로 상징되는 국제사회가 '용인'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는 점, 그리고 미국이 TPP를 탈퇴하고 미·일 FTA 협상을 통해 농산물,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한 추가 협상을 예고하는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이 배제된 TPP11 협상을 주도하여 선제적으로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고 있는 점,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셰이프가드를 철회하라는 미국 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은 1980~90년대처럼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통상압력에 끌려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줌.
 - 다만,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일본정부가 대미 경제협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점은 중장기 대미 통상전략 관점에서 참조할 만함.
 - 일본은 미·일 통상협의체인 '성장을 위한 미·일 경제파트너십(2001~09년)' 이후에도 2015년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일 협력에 관한 Factsheet'를 토대로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현재는 일본의 고속철도(신칸센) 기술을 미국에 도입하거나 미국에서 LNG를 수입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일본 외무성과 미국 주(캘리포니아, 워싱턴, 메릴랜드, 인디애나)와의 경제 및 무역관계에 관한 협력각서 서명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정부는 미국 주정부와의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음. 인디애나주와의 협력각서의 경우, 첨단 제조업 및 소재산업 협력사업과 공동 R&D, 스마트카·자율주행차 공동개발, 항공기 공동개발, 인프라 공동개발 등을 담고 있어 한·미 정부 간 산업협력 의제를 고려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RCEP, 한·중·일 FTA

-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RCEP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 간 커다란 쟁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 정부는 자국기업의 보호를 우선시하여 낮은 자유화 수준의 '조기합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가와의 협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RCEP 협상이 상품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관세철폐 수준과 공통양허안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이 공통양허안을 채택하고 2012년 8월의 상기 협상지침이 표명한 기체결 ASEAN+1 FTA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상
- 둘째, RCEP은 TPP에 견줄 만한 수준이나 범위의 통상규범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한 가운데, RCEP의 통상 규범을 보다 충실화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
- 셋째, 일본정부의 FTA 정책이 자국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고 RCEP 협상에서도 부가가치의 '완전누적' 개념 도입에 주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의 ASEAN 및 RCEP 역내에서의 생산 네트워크 구축에 일조할 수 있도록 원산지 규정 협상에 협상력을 모을 필요

- 한·중·일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 첫째, 3국의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한·중·일 FTA에 대한 여론 환기가 필요. 2015년 11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년여가 경과하는 동안 한·중·일 FTA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실정. 2018년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일 FTA 협상이 새롭게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둘째, 한·중·일 FTA 협상은 현실적으로 타결 방식과 난이도를 고려해 대응할 필요. 협상 타결 방식에서는 일괄타결보다는 분리타결 방식에 입각하고 난이도 측면에서도 산업·환경 등 협력 분야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셋째, 한·중·일 3국의 비관세장벽 개선 노력도 중요. 특히 운송규제, 기준인증, 산업표준 등의 조화(harmonization)를 무역원활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분야로 다룰 필요

3)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

- 2017년 12월 현재 지금까지의 TPP11 협상과정과 기본합의 내용에 비춰 볼 때 대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일본정부가 향후 TPP는 물론 다른 메가 FTA에서 '21세기형 FTA'로서 TPP를 준거로 삼는 서비스무역, 투자, 지적권,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환경·노동 등 제반 통상규범 분야에서 면밀한 손익계산 필요
 - 둘째, 일본정부는 TPP가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여타 FTA 협상과 마찬가지로 TPP 협상 과정에서도 자국기업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축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우리 정부로서도 기체결 FTA는 물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RCEP이나 한·중·일 FTA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이 어떻게 FTA를 활용할 것인지 전략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셋째, 일본정부는 2017년 11월 TPP11 기본합의 도출이라는 일련의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자국의 기체결 FTA는 물론 협상 중인 RCEP, 한·중·일 FTA, 일·EU FTA를 통틀어서도 TPP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는 일본정부가 현재 협상 중인 RCEP이나 한·중·일 FTA에서 TPP를 준거로 매우 강경한 협상자세를 견지할 것임을 시사
 - 넷째,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양자간 FTA나 TPP 참여를 고려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한·미 FTA의 관세양허 수준으로 TPP11에 참여할 경우, 한국의 대일 관세삭감 효과를 추정하였는데, 한국과 일본의 현행 기준관세율이 비대칭적이라는 점, 즉 일본은 관세율 수준이 대체적으로 낮고 한국은 높다는 점이 우리 정부의 대일 FTA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크게 제약할 것으로 봄. 다시 말해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한국 기업이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과거 보호무역주의적 관점에서 높게 책정하였던 제조업 부문에 대한 관세구조가 한국기업의 대일 경쟁력 강화에 실효성이 있었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일·EU FTA

- 일·EU FTA에 따른 한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지만, 산업 측면에서는 대EU 수출시장에서 업종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EU FTA 발효에 따라 우리의 대EU 수출에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업종에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이를 정책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 특히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수송기기 업종 및 전자기기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분야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긴급
 - 한·EU FTA 활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 2016년 대EU 활용률은 수출 84.8%, 수입 72.1%로, 수출에서는 대캐나다(89.1%), 수입에서는 대칠레(99.3%), 대베트남(88.2%) 등

보다 상당 폭 낮은 수준. 또한 산업별 대EU 활용률은 수출 70.6~89.4%, 수입 52.8~86.0%로 편차가 큼.

● 향후 한·EU FTA 개정 작업과 관련해 일·EU FTA 협상 타결로부터 함의를 찾을 수 있는 분야는 비상품 시장 접근과 규범 분야임.

- 일·EU FTA의 비상품시장 접근 부문에서 기존 한·EU FTA와 상이한 분야는 서비스·투자의 양허 방식(일·EU: 네거티브, 한·EU: 포지티브), 투자자 보호(일·EU: ISDS 또는 ICS 미합의, 한·EU: 협정문 미포함), 자연인 이동(EU의 GATS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임.
 - 특히 인력이동 분야에서 EU는 일본에 대해 GATS 이상으로 확대했으므로, 최혜국대우(MFN) 관점에서 우리에게도 함께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규범 분야에서는 한·EU FTA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기업지배구조, 농업협력, 중소기업 부문이 일·EU FTA에 포함됨.
 -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EU가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최근 국내에서 진행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OECD 원칙의 정합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임.
 - 농업협력 및 중소기업 부문은 협상 타결 결과와 EU의 입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의 경우 일·EU 및 한·EU FTA가 동일한 상황이므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이 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양자간 논의의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KIEP**

[참고문헌]

- 阿部一知. 2012. 「第6章 日中韓FTA：経過と課題」. 山澤逸平, 馬田啓一, 国際貿易投資研究会 編著. 『通商政策の潮流と日本 FTA戦略とTPP』, p. 104. 勁草書房.
- 尾池厚之. 2006. 「日本のEPA交渉の展開と展望：日本型EPAの確立と新たな挑戦」. 『貿易と関税』, 2006年12月号. 日本関税協会.
- 大木博巳. 2016. 「TPP貿易とRCEP貿易の展望」. 『メガFTAと世界経済秩序』. 石川幸一・馬田啓一・渡辺頼純編著, 第14章. 勁草書房.
- 外務省. 2002. 「日本のFTA戦略」. 2002년 10월. <http://www.mofa.go.jp/mofaj/gaiko/fta/senryaku.html>(검색일: 2017. 10. 25).
- 外務省. 2017. 「経済連携協定の効果：貿易・投資の動向」. 外務省経済局, 2017年 3月.
- 清川佑二. 2015. 「日中韓FTA交渉の展望とアジアの新通商秩序の出現：WTO新ラウンド推進に貢献」. 『国際貿易と投資』. 国際貿易投資研究所.
- 経済産業省. 2013. 『通商白書2013』.
- _____. 2015. 『通商白書2015』.
- _____. 2017. 「平成30年度 経済産業政策の重点」. (平成29年8月)
- 経済連携促進関係閣僚会議. 2004. 「今後の経済連携協定の推進についての基本方針」. (12. 21) http://www.mofa.go.jp/mofaj/gaiko/fta/hoshin_0412.html(검색일: 2017. 10. 25).
- 小林守. 2008. 「中国におけるFTA政策の背景および現状と今後の通商戦略」. 『我が国の東アジアFTA/EPA形成の在り方』, 第三章. 日本機械輸出組合.
- 小針清孝. 2015. 「ASEANにおける新中間層の台頭と日系企業の課題」. 『知的資産創造』, 2015年 7月号. 野村総合研究所.
- 首相官邸. 2013. 「日本再興戦略-JAPAN is BACK-」. (6. 14)
- 助川成也. 2016. 「RCEPの意義と課題」. 『メガFTAと世界経済秩序』. 石川幸一・馬田啓一・渡辺頼純編著, 第5章. 勁草書房.
- _____. 2017. 「東アジア地域包括的経済連携(RCEP) とアジア統合の中核ASEANの役割」. 『アジア研究所報』, 第168号.
- 高瀬保. 2003. 『WTOとFTA：日本の制度上の問題点』. 東信堂.
- 菅原淳一. 2008. 「日・ASEAN包括的経済連携協定:その概要と二国間との比較」. 『みずほ政策インサイト』. みずほ総合研究所. (5. 12)
- 通商産業省. 1999. 『平成11年版通商白書』. 재인용: 水田慎一 2008. 「日本のFTA/EPA政策の経緯・成

- 果の整理・分析」, 『我が国の東アジアFTA/EPA形成の在り方』, 第V章. 日本機械輸出組合.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 2016. 「ASEAN自由貿易協定(AFTA)の物品貿易に関する協定(ATIGA) (AFTA-ATIGA)」.
- 別所健一. 2013. 「日本のEPA・FTAについて」, 外務省・北九州商工会議所主催EPA(経済連携協定)活用セミナー. (2. 6)
- 水田慎一. 2008. 「日本のFTA/EPA政策の経緯・成果の整理・分析」, 『我が国の東アジアFTA/EPA形成の在り方』, 第V章. 日本機械輸出組合.
- 三菱東京UFJ銀行. 2017. 「アジアにおけるの進行状況」, AREA Report 485. 2017. 7. 3.
- 吉野文雄. 2012. 「FTA神話の崩壊」, 『通商政策の潮流と日本: FTA戦略とTPP』, 山澤逸平・馬田啓一・国際貿易投資研究会編著, 第2章. 勁草書房.
- 伊吹英明. 2016. 「自動車産業をめぐる構造変化とその対応について」, 『日本貿易会月報』, 2016年3月号.
- 小野沢純. 2017. 「TPP協定におけるマレーシアのプミプトラ政策: プミプトラ企業の競争力改善となるか」, 『国際貿易と投資』, No. 127. 国際貿易投資研究所.
- 菅原淳一. 2017a. 「大筋合意に至ったTPP11」, 『みずほインサイト』, みずほ総合研究所. (11. 13)
- _____. 2017b. 「HEU・EPA 交渉大枠合意の意義」, みずほ総合研究所. (7. 12)
- 高橋俊樹. 2017. 「TPPから日米FTAの関税効果を探る: 日本、マレーシア、ベトナム、米国におけるEPA/FTA/TPP利用の効果比較」, 『国際貿易と投資』, No. 108. 国際貿易投資研究所.
- 滝井光夫. 2016. 「容易ではない米国のTPP批准: 米国の産業界、労働界は何を問題としているか」, 『国際貿易と投資』, No. 104. 国際貿易投資研究所.
- 島山襄. 2016. 「TPP交渉の成果と評価」, 『世界経済評論』, 2016年5・6月号.
- 外務省. 2017. 「日EU経済連携協定(EPA)に関するファクトシート」, (11月 2日)
- 経済産業省. 2017. 「日EU経済連携協定(EPA)における工業製品関税(経済産業省関連分)に関する大枠合意結果について」, (平成29年11月)
- 経済産業省. 2017. 「平成30年度 経済産業政策の重点」, (平成29年8月)
- 財務省. 2017. 「日EU・EPA市場アクセス交渉等の最終結果」, (7月 6日)
- 西村聞多. 2017. 「日EU経済連携協定(HEU・EPA)の大枠合意について」, 『ファイナンス』, 財務省.
- Baldwin. 2009. “US Trade Policy Since 1934: An Uneven Path Toward Greater Trade Liberalization.” NBER Working Paper No. 15397.
- European Commission. 2017a. “Client and Supplier Countries of the EU28 in Merchandise Trade (value %).”
- _____. 2017b. “EU-Japan EPA – The Agreement in Principle.” (July 6)
- Gandolfo, Giancarlo. 2014. “The New Protectionism.” *International Trade Theory and*

Policy, Second Edition. (Springer)

- Hufbauer, Gary Clyde. 2016. "Could a President Trump Shackle Imports?" PIIIE Briefing 16-6.
- Jackson, James K. 2016. "US Trade with Free Trade Agreement(FTA) Partne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 Kawasaki, Kenichi. 2014.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EPAs in Asia-Pacific."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4-E-009. (January)
- _____. 2017. "Emergent Uncertainty in Regional Integration-Economic impacts of alternative RTA scenarios." GRIPS Discussion Paper 16-28. (January)
- Laird, S., and A. Yeats. 1986. "The UNCTAD Trade Policy Simulation Model: A Note on the Methodology, Data and Uses." UNCTAD Discussion Papers 19.
- Petri, Peter A., Michael G. Plummer, Shujiro Urata, and Fan Zhai. 2017. "Going It Alone in the Asia-Pacific: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out the United States." Working Paper 17-10.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Ray, Edward John. 1987. "Changing Patterns of Protectionism: The Fall in Tariffs and the Rise in Non-Tariff Barriers Symposium: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Vol. 8, Issue 2.
- Richardson, J. David, Lione Olmer, and Paula Stern. 1994. "Trade Policy." Martin Feldstein ed. *American Economic Policy in the 1980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Schoppa, Leonard J. 1997. *Bargaining with Japan: What American Pressure Can and Cannot Do*. Columbia University Press.
- Sonya, Chum. 2014. "The Impact of Japan's Rivalry with China on Its Willingness to Pursue Free Trade Agreements."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Vol. 18, No. 3, pp. 215-251.
- Urata, Shujiro. 2014. "Japan's Trade Policy with Asia." *Public Policy Review*, Vol. 10, No. 1, Policy Research Institute, Ministry of Finance. (March)
- USITC. 2009. "U.S. Trade Policy since 1934." *The Economic Effects of Significant US Import Restraints: Sixth Update*, USITC Publication 4094, Investigation No. 332-325.
- _____. 2010. "Import Injury Investigations Case Statistics (FY 1980-2008)."
- USTR. 2017. *2017 Trade Policy Agenda and 2016 Annual Report*. March 2017.
- WTO. 2016. "Reports on G20 Trade and Investment Measures(Mid-May to Mid-October 2016)."